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14
----------	-------

발의연월일 : 2024. 1. 18.

발 의 자 : 김학용 · 이주환 · 정운천
유경준 · 엄태영 · 서병수
이헌승 · 송석준 · 안철수
박대수 · 권영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u>2024년 12월 31일</u>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략) 3. (생략) ② ~ ⑤ (생략)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u>2030년 12월 31일</u> ----- ----- -----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